

사전심사제도 궁금한 점?

Q & A

1 사전심사제도 신청은 의무사항인가요?

- 사전심사제도는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주기 위한 일종의 컨설팅 제도로,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.

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?

- 국세청에서는 심사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과 엄격한 내부통제 등을 통해 제출하신 자료를 철저히 관리·감독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
3 신고내용확인이나 세무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
- 사전심사는 과세 목적이 아닌, 성실신고지원을 통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, 불확실성 해소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.

4 현장확인 은 필수사항인가요?

- 사전심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. 다만,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5 기술심사를 하는 외부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되나요?

- 국세청 내부의 기술전문가와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기술보증기금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위촉한 외부위원이 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.

제도·혜택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.



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신청 문의

- 국세청 법인세과
TEL (044) 204-3923~9
-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
TEL (02) 2114-3033~40
-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
TEL (031) 888-4963~9
-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
TEL (032) 718-6494~7
-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
TEL (042) 615-2493~5
-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
TEL (062) 236-7483
-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
TEL (053) 661-7483
-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
TEL (051) 750-7463~5



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.
평일 9시-18시(말세제보는 24시간)

2021.1. 국세청 법인세과



2021년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

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신청으로, 성실신고에 필요한 사전 지원도 받고, 세무상 불확실성과 가산세 부담도 없애고~!



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란?

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 도입

-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&D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
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[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]
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·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



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도입 효과

- 납세자** R&D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완화
- 국세청** R&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 구축
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신청인
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**내국법인과 거주자**(외국법인, 비거주자는 제외)

신청방법

- 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**신고 전에 신청이 가능**하며,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방법	· 우편, 홈택스, 세무서 민원봉사실
신청기한	· 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신고 전 ·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
제출 서류	신청서 · 「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」 · 「연구개발비 명세서」, 「연구개발 보고서」
	첨부 서류 · 그 밖의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등 ※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

※ 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 → 국세신고안내 → 법인신고안내 → 법인세 → R&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 및 접수

신청인 : 내국법인 및 거주자
신청대상 : R&D 세액공제 적정여부
신청기한 : 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신고 전
- 공제누락 분은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전

서류 검토

제출서류 : 연구개발비명세서, 연구개발보고서 등
서류검토 :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제출서류 검토
- 필요한 경우, 현장확인 가능

결과 통보

결과통지 : 서면으로 통지, 재심사 신청가능
혜택 :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
과소신고 가산세 면제

사전심사 절차는요?

심사담당(2021년 지방청 R&D팀 신설)

- 2020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하였으나, 신속한 심사를 위해 2021년부터 일반법인은 국세청 본청(R&D 사전심사팀)에서, 중소기업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나누어 심사합니다.

심사내용

-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·인력개발비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[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]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.

- (기술검토)** 연구·인력개발 활동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연구·인력개발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
- (비용검토)** 연구·인력개발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지 여부

심사대상

- 일반 R&D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기술·비용 검토,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비용 검토를 합니다.
- 신성장·원천기술R&D에 대한 R&D 사전심사는 법령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에서 기술심사를, 국세청에서 비용 심사를 구분하여 진행합니다.

구분	정의	심사기관	
		비용	기술
일반 R&D	신성장·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·인력개발비	국세청	국세청
신성장 R&D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	국세청	한국산업 기술진흥원

심사방법

-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.

심사결과

- 「사전심사 결과통지서」를 통지해 드립니다.
-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며, 재심사는 국세청 본청 R&D 사전심사팀에서 심사 하게 됩니다.

2020년 이후 연구노트 등 작성·보관 의무화

증거서류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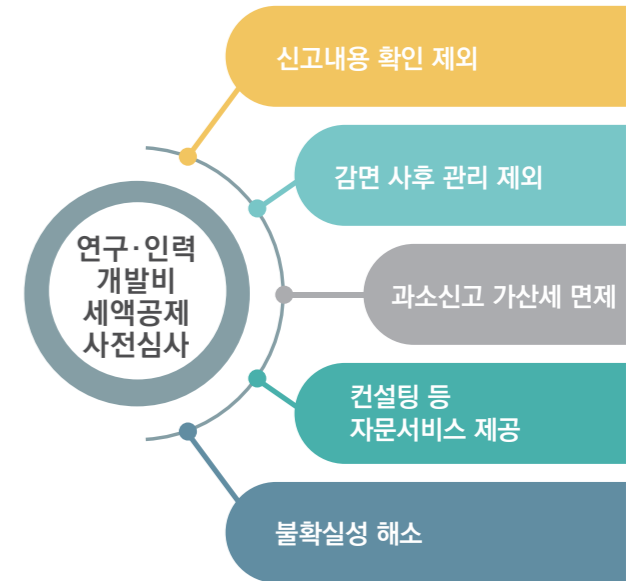
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 보고서(전체), 연구노트(신성장R&D) 등 증거서류를 작성·보관 의무화

- 연구과제별(부서별, 연구원별 선택 가능)로 별도의 연구 노트 작성
- 작성자·작성날짜 등 기록하고, 기술개발 진척도·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·실패 여부 등 자유롭게 작성

보관의무

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의무

어떤 혜택이 있나요?



「R&D 세액공제 사전심사」에 따른 혜택

-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단,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, 사실관계의 변경·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

- 01) 심사받은 내용은 **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- 02)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라도, **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**됩니다.
- 03) 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**컨설팅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**해 드립니다.
- 04) 사전심사를 통해 **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**하고 **납세협력 비용**을 줄일 수 있습니다.